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포상금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1.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포상금 예산 집행

「지방재정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세출예산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제2항 [별표 12]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303-01)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해외과건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포상금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2013. 1. 1.부터 2016. 8. 31.까지 강원도 포상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결과, 79건 345,567천원⁵¹⁾의 집행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포상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2. 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구입예산 부적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1] 제6호나목⁵²⁾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비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3. 1. 1.부터 2016. 8. 31.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퇴직자 기념품으로 방짜세트 구입비를 53회에 걸쳐 44,900천원⁵³⁾을 업무추진비 비목이 아닌 포상금 비목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앞으로 포상금 비목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구입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1) 2013년 26건 108,847천 원, 2014년 27건 138,600천 원, 2015년 21건 77,100천 원, 2016년 5건 21,020천 원

52)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53) 2013년 14건 8,400천 원, 2014년 19건 17,000천 원, 2015년 10건 10,800천 원, 2016년 10건 8,700천 원